

의안번호	제 304호
의 결 연 월 일	2012년 4월 일 제308회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2. 4. 6.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4
----------	-----

제출연월일 : 2012년 4월 6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미술장식품 업무가 시군에서 시도로 이관되어 이를 반영하고
- 이와 함께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범위, 지정 및 취소, 지원 및 육성, 지정 유효기간 사항 일부 자구 수정(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신청, 설치확인, 사후관리, 건축비용의 비율, 설치금액 산정 사항 신설(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임기, 기능, 위원장의 선임, 위원회의 운영 및 소집, 작품의 감정·평가, 위원의 의무, 위원의 해촉, 회의 공개, 간사 및 서기 사항 신설(안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붙임

6.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 : 붙임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충청북도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계획수립 및 관련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충청북도는 정체성 확립과 창의적인 문화예술 구현을 통하여 함께하는 충북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원을 지원 할 수 있다.

제2장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제3조(범위)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이란 「민법」, 「상법」에 의한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극단·뮤지컬단·관현악단·무용단·합창단·오페라단·실내악단·창극단·국악단·공연기획단 또는 이와 유사한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
2. 전시행사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3. 무대예술공연장 운영법인

②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단체란 제1항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정 및 취소) ①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중에서 지원·육성이 필요한 법인·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예술활동 실적이 저조할 경우 등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기준, 절차, 취소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 및 육성) ①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공연·전시시설 운영자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와의 공동 기획공연·전시를 조건으로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정유효기간 등)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내에 변경사항이 발생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변경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건축물 미술작품 창작 활동

제7조(설치신청) ① 창작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 설치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이하“건축주”라 한다)는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6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충청북도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 할 수 있다

- ④ 감정·평가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결과에 대하여 해당 건축주는 도지사에게 구체적 사유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설치확인)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건축주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결과를 충청북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미술작품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도지사는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2년마다 정기조사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비용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단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 건축비용의 1천분의 2
2.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6

제11조(설치금액 산정)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설치금액 = 설치대상 연면적(최종설계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 × 제10조에 따른 적용비율

제4장 위원회

제1절 충청북도문화예술위원회

제12조(설치) 충청북도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문화예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3조(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1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으로 필요시 개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2명의 범위 내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9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제20조(설치)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미술작품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21조(구성 및 임기 등) ① 영 제14조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50명 내외의 미술작품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되, 부패행위 전력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2. 문화일반·예술경영·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에서

-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미술분야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로 인정받은 사람
- ② 심의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업무담당국장, 건축담당과장과 위촉직 위원으로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이 된다.
-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2조(기능)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정·평가한다.

1. 미술작품의 가격 : 가격의 적정성(작가경력, 비용내역 등) 계약의 합리성 등
2. 미술작품의 예술성 : 조형미, 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 환경과의 친화성 등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 설치 위치의 적절성,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 등
5.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제23조(위원장의 선임) 위원장은 회의 개최시마다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4조(위원회 소집 및 운영) ① 도지사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매 회의 때마다 당연직 포함 10명 내외의 위원을 선정하여 개최하되, 해당지역 및 해당 분야 전문가가 3분의 2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작품의 감정·평가) 미술작품의 감정·평가는 위원별 실명 채점
으로 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26조(위원의 의무) ① 심의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
여야 하며 미술작품의 감정·평가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재직기간에 한하여 도내에서의 건축
물 미술작품 출품을 제한한다.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감정평가에 관여 할
수 없다.

1. 심의위원은 본인 및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과 관련된
경우
2. 심의위원이 위촉일 당시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심의위원이 해당 미술작품에 관하여 제작 등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

④ 제3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해당 미술작품의 감정평가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기피신청 또는 위원장이
제척할 수 있다.

제2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심의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한 경우
2.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심의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회의 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2. 감사·계약·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중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2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30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1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 한다.

1. 제7조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의무 고지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작품의 설치여부 확인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작품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4. 영 제15조에 대한 미술작품의 철거·훼손시의 조치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임기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기간이('12.11.1) 만료되는 때로 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앞 쪽)

신청번호	신청일자
------	------

건축개요	위치		건물명
	건축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지역·지구		총공사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높이	구조
	용도	외장재료	종별 []신축 []증축
	건축허가일자	설계변경허가일자	사용승인 예정일

건축설계자	주소		
	사무소명	성명	전화

미술작품 개요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총가액		설치예정일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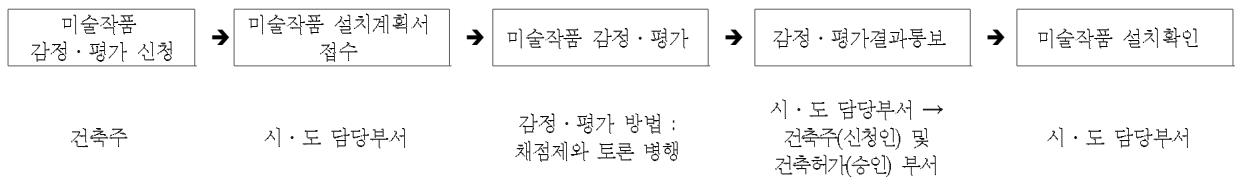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2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3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4호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5호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3부
 -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 (1)건축개요
 - (2)주위현황도
 - (3)건축물부수도
 -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 (5)미술작품개요
 -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 (8)작품설명판(표석)
 -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

처리절차



작가경력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인적사항	성 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작가경력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작품경력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		

대행인 경력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일반사항	사업체명(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대행책임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행책임자경력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		

첨부서류	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	--------------------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위치				
건축주				
건축물 총 연면적	m ²			
	구분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	
	건축물 연면적(설치대상면적)			
	제외시설면적	소계		
		주차장		
		기계실		
		변전실		
		공조실		
		전기실		
		발전실		
기타				
미술작품 설치비용	①건축물연면적 m ²	② 표준건축비 원	③ 적용요율 %	계(①×②×③) 원
미술작품 설치계약금액				원

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

1. 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0%(지자체별 적용요율 1%~7%)
 -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2.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0%(지자체별 적용요율 5%~7%)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	------

작가명	
-----	--

미술작품	작품명	
	크기	재질

	구분		가격	비율	세부사항		
	사용금액 내역	창작비	작가창작비(Artist Fee)	천원	%		
모형 및 원형제작비			천원	%	모형제작비	천원	
					원형제작비	천원	
제작비		재료비	천원	%			
		인건비	천원	%			
설치비		작품 운반비	천원	%			
		현장 설치비	천원	%			
		기초 및 부대공사비	천원	%			
대행수수료			천원	%			
행정비용						심의도서제작비	천원
						모형제작비	천원
			천원	%		기타	천원
기타						보험료	천원
						조명	천원
						분수	천원
		천원	%		기타	천원	
합계							

유의사항

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은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

심의번호		심의일자			
평가기준 및 배점		작 품 명			
가격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경력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미술작품설치계약금사용계획서상 비용내역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작가-건축주간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계약이 합리적인가? 			
예술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미술작품의 조형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형식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내용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독창성이 인정되는가?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미술작품이 도시미관에 기여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이 환경과 친화적인가? 			
접근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미술작품의 설치 위치의 적절한가? -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이 가능하여 공공 미술로서의 기능이 있는가? 			
유지·보존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미술작품의 유지·보존계획서상 계획이 적절한가? 			
점수계	100				
판 정	적합	(70)점 이상일 경우			
	부적합	(70)점 미만일 경우			
비고	부결 및 조건부 사유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관련법령 발췌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예술활동의 실적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시공연질서문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 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예술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전문예술법인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 단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축물에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건축비용의 100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이하 제5호 및 제6호에서 같다)의 조직·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의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한다.
1. 조직·인력운영의 적정성
 2. 재정 운영의 건정성
 3.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실적
 4. 공연·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2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의2(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① 법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변경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4조의3(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취소) ① 법제7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전시실적이 연 1회 미만인 경우
2. 1년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 제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시·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행위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제4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취소 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 법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 1만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의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기술사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법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③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건축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설계 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9조에서 “미술작품”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2와 같다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3조(미술작품의 설치절차·방법) ① 법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항의 감정·평가 결과에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 2(기금출연의 절차·방법) ① 법제9조제2항에 따라 제12조제6항의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려는 건축주(이하 이종에서 “건축주”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출연계획서를 시·도지사 및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전까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건축주가 제12조제6항에 따른 금액의 출연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출연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작품의 가격
2. 미술작품의 예술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5.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③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면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미술작품 철거·훼손 시의 조치) 시·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 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2(미술작품 관리대장의 작성·관리) 시·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시·도에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관리 한다.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일부 운영비
-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보조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따른 위원회 운영관리

2. 비용 발생 요인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일부 지원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별도 예산조치 없음**
- 사업비 지원을 추정하였을 경우 일부예산 지원 가능
 - 일반단체와 같이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지원 가능(**현재 운영중**)

나. 추계 결과(지원을 추정하였을 경우)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2011년도) : 11개단체
 - 11개단체 사업계획에 따라 일부사업비 지원 가능
(1개단체 평균 10,000천원 정도 추정)
- 일부운영비 : 4,500천원
 - 충청북도 문화예술위원회 개최(1회) : 900천원
 -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개최(4회) : 3,6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 자체재원 사용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문화관광환경국 문화예술과장 강 성 택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계
세 입						
세 출	114,500	114,500	114,500	114,500	114,500	572,500
전문예술법인·단체 사업비 일부지원	114,500	114,500	114,500	114,500	114,500	572,5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14,500	114,500	114,500	114,500	572,500
	지방세	114,500	114,500	114,500	114,500	572,5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구·군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